

일본의 외형표준과세는 지방이 선도

-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정치가 흡수 -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행정사무관

1. 들어가는 말

일본의 세제는 미군 점령하인 1949년의 사우프(당시의 美극동군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요청으로 來日한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 일본의 세제개혁 代父) 권고를 계기로 소득세나 주민세라 하는 직접세 중심으로 변한다.

그 후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간 1989년 4월부터 실시된 소비세(도입 당시의 세율은 3%였으나 현재는 5%이며, 지방소비세분이 1%임) 등에 의해 간접세가 강화된 구조이다.

이 결과 지방세인 주민세 납세액은 매년 감소하고 동일한 수입, 가족 구성의 가정에서는 지난 10여년 전에 비해 약 18만 엔이나 줄어든 결과로 된다. 연수입 1,000만 엔에 대한 '88년의 주민세는 68만 엔 정도였으나 '98년에는 40만 엔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오오사까(大阪府)議會는 2000. 5. 30 본의회를 열어 규모가 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사업세의 「외형표

준과세」를 도입하는 조례안을 가결한다. 동 조례안은 東京都가 이미 2000년 4월부터 시행하였으므로 전국에서 2번째이다.

「부담이 많고 공평성에 반한다」 등의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大阪은행협회 등은 大阪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외형표준과세」란 무엇일까. 일본 정부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노력과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2004.4.1부터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법인사업세에 대한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하는 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3년도 세제 개정에서 자본금 1억엔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제가 창설되어 2004.4.1 이후 개시 사업년도 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외형표준과세 도입은 지방정부가 선도 역할을 하여 중앙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인 것에 주목하여 그 과정을 살펴봄과 동시에 외국의 운용 실태도 정리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일본의 사업세 개요

일본의 사업세는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세로 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가 있다. 2001년 기준 47개 도도부현 지방세 수입의 27.9% (개인1.5%, 법인 26.4%)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개인사업세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중 전 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그 종류로는 1종사업(물품판매업, 보험업 등 37개업종 / 표준세율 5%), 2종사업(축산업등 3개업종 / 표준세율 4%), 3종사업(의료업, 치과의료업, 약제사업 등 28업종 / 표준세율 5%)이 있다.

과세주체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소재하는 도도부현이 된다. 도도부현의 납세통지서에 의거 8월에 교부, 11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3종사업중 조산원업외의 2종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인 3%가 적용된다.

한편, 법인사업세는 국제인 법인세와는 별개로 법인의 이익에 따라 부담한다. 사업세의 세수는 도도부현에서 1위를 차지하는 基幹稅 성격을 갖는다.

법인사업세의 세율은 수입금액을 과세법인으로 하는 법인,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의 2종류로 나뉜다. 당초에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전기공급업등 4종)은 수입금액의 1.3%가 표준세율이며,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그 외 법인)은 일반법인의 경우는 5~9.6%, 청산소득

에는 9.6%를, 특별법인은 5~6.6%, 청산소득은 6.6%로 되어 있었다.

과세대상은 내국법인, 외국법인 구분 없이 과세되며 임업이나 광물 채굴사업, 특정 농사 조합법인이 행하는 농업은 면제된다. 사업세의 납부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가. 법인사업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행정서비스는 법인의 사업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한다. 그 수익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환경보전, 산업도시 기반 정비, 경찰, 소방, 방재 매우 광범위하게 미친다.

법인사업세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그 자체에 과세하는 세이며 법인이 그 사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점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세의 부담액이 법인소득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법인사업세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점에서 법인사업세는 법인에 대하여 그 기업 활동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 부담을 구하는 법인세와는 과세 근거, 과세객체 등을 달리하고 있다.

법인사업세는 법인의 사업활동과 지방행정

서비스의 폭넓은 수익관계에 착안하여 사업에 대해 과세하는 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법인의 사업활동 규모를 될 수 있는 한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기공급업, 가스공급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의 사업활동 규모를 적절히 나타내는 것으로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과세표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법인사업세의 과세표준으로 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계산에 의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법인세의 소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내국법인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내에서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되어 있지만 법인사업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각종의 행정서비스와 사업 활동과의 수익관계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부담을 구한다는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국내에 있어서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점 등 소득계산에 있어 법인세의 예에 의하지 않는다.

우선, 일본의 법인사업세 연혁을 살펴본다.

사업세의 전신인 영업세는 1878년에 과세 객체를 모든 회사 및 도매업, 모든 중개상·소매상, 잡상으로 하는 부현세로 창설되었다. 1896년에 영업세는 지방세에서 국세로 이관되고 자본금액 등의 외형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부현은 국세인 영업세에 부가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국세의 영업세 과

세 대상이 되지 않는 소영업에 대해 부현세로서 영업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었다.

1926년에는 영업세가 폐지되고 순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영업수익세가 창설되어 부현은 이 영업수익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영업수익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 및 영업수익세의 면세점 이하의 소매업에 대하여 영업의 순익, 수입금액, 영업용 건물의 임대가격 등 외형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영업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된다. 1940년에 영업수익세와 영업세는 통합되고 새로이 영업의 순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국세로서 영업세가 창설된다.

1945년의 패전 이후 1947년에 영업세는 국세로부터 지방세로 이양되어 다시 도부현의 독립세로서 법인 및 개인의 영업에 대하여 각각 순익 또는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되었다.

1948년에 영업세는 그 명칭을 사업세로 고치고 새로이 개인의 농림업, 수산업 등의 원시산업을 과세대상에 추가함과 동시에 따로 특별소득세를 신설하여 자유업 등을 과세하는 것으로 되었다.

1950년에는 사업세 및 특별소득세에 대체하여 도부현세의 주된 세로서 부가가치세가 창설되었지만 잠정적 실시를 보류한 채 사회경제 사정의 추이와 여론의 동향 등이 그 실시를 허락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는 1954년에 폐지되고 만다.

나. 법인사업세의 과세상 문제점

1) 세수의 불안정성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교육, 환경보전, 산업도시 기반정비, 경찰과 소방 등 폭 넓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에 있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을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는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고 그 재원의 근간으로 되는 지방세는 될 수 있는 한 안정적이고 세수 변동이 적은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도도부현 세제는 법인의 손익에 대한 과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세의 영향을 받기 쉽고 특히 버블경제 붕괴 이후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법인세수는 크게 하락한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은 1985년도에 35.3%까지 상승하였지만, 1990년대의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법인세수 비중은 계속 하락하여 2000년에는 약 20%로 떨어지고 만다. 적자법인(결손법인)이 68.4%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과세의 불안정이 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도부현의 최대 세목인 법인사업세에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하고 응익과세로서 사업세의 성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도부현 세수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은 지방세제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2)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 추진

경제의 국제화, 광역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일본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노력하고 이익을 올릴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

법인사업세에 외형표준과세 도입을 도모하고 「가볍고 넓게」 세 부담을 분담하는 구조를 개혁해 가는 것은 기업의 노력 성과로서의 소득에 집중적으로 세부담이 과세되지 않게 되고 기업경영의 효율화와 수익성의 향상에 연계하기 위해 이러한 경제구조개혁에도 공헌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III. 외형표준과세 제도의 정착 과정

가. 東京都의 은행세 신설

현행 제도가 시행되기 전 東京都와 오오사카부에서 도입한 은행업 등에 대한 외형표준과세는 지방세법 제72조의 19를 근거로 한다.

그 과세표준은 업무 순이익이며 이것은 일반의 기업에서는 매상총이익에 상당하는 것이다. 세율은 3%(특별법인에 대해서는 2%)였으며, 과세표준의 도도부현별 분할기준은 현행 사업세의 분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5년간 한시조례였다.

외형표준과세는 東京都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지사가 묘안을 냈다. 적자가 발생한 은행에서도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2000년 2월에 제기하였다. 지사는 중앙정부

나 국회 등과 사전의 조율없이 도민에게 직접 호소하였다.

『국가와 재판하여 패소하여도 좋다』고 하면서 직원을 격려하고 중앙정부나 국회와 사전 조율없이 우선 기자회견을 하여 직접 도민에게 호소한 것이다.

이시하라 지사는 『국가는 地方分權이라고 말하지만 지방의 손발을 묶고 稅·財源의 이양은 중장기 과제로 끝나버렸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地方이 앞질러 하지요』라고 한다.

2000.4.1부터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으로 사무는 지방에 대폭 이양되었지만,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의지하게 됨에 따른 지방의 강한 반발이다.

이처럼 국가의 의표를 찌른 수법은 혁신 지자체 시절의 공해대책이나 복지시책에서 보인 미노베(美濃部亮吉) 前 지사의 手法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99년부터 이시하라 지사는 특별팀을 만들어 『무엇인가 재원은 없을까, 게다가 都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지시하였다.

외형표준과세 방식의 도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렇지만 국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치바(千葉)현의 경우에는 '75년부터 석유화학 공장 등에 과세하려고 한 경험도 있다.

은행에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예금금리는 한없이 Zero에 가깝다. 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시스템 안정화 조치가 정당성이 있을까 등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과세방안에 대하여 동경도 議會는 찬성이었다. 의회내의 야당도 기본적으로는 찬성이

었다. 다만, 최대회파인 자민당은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도정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하면서도 党 중앙본부로부터 올 압력을 예상하고 있었다.

동경도는 1990년대 초의 버블(거품경제) 붕괴 후 법인으로부터의 세수입이 급감하여 재정난에 빠져 버린다. 도도부현세의 일종인 법인사업세의 과세기준을 기업의 소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금 잔고 5조엔 이상의 은행에 화살을 맞추어 5년간 외형표준방식에 의해 과세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이 과세방식은 경찰, 소방, 교통 등 기업이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댓가를 도도부현에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소위 지방세 『응익의 원칙』에 입각한 발상이다.

赤字가 나더라도 서비스를 향수하므로 회사의 규모 등 밖에서 볼 수 있는 외형기준에 기초하여 지방세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지방세법에는 도도부현이 외형표준과세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그 점을 찢러 몹시 쪼들린 창고를 윤택하게 하고 독자재원의 확보를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교묘한 전략을 짰 것이다. 지방이 중앙을 향해 목소리를 높힌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에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소위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이 있지만 시행에 있어서는 상당히 느슨한 감이 있다. 세율을 올리는 세목 운영은 매우 미미하며, 2004년도에 재산세 부과시 성남시 등이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나. 중앙정부는 손을 들고

일본 국세청의 1997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 법인의 약 65%가 赤字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는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만을 향수하고 있는 약삭빠른 법인도 있다고 한다.

『정부세제조사회』에서도 1999년 8월의 조사보고서에서 외형표준과세의 도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수상도 1999년 9월의 전국 도도부현 지사회의에서 “외형표준과세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안정적 세제 확립을 향한 구체적 검토를 계속해 간다”고 하여 전향적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동경도가 과세하기로 한 결정에는 세수의 대폭 감소 배경도 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등을 포함하여 주요 20개 은행이 동경도청에 납입한 법인사업세는 '98년에는 2,100억 엔이었지만 '99년에는 34억 엔으로 대폭 감소한다.

한편, 경기변동에 의한 지방 세수의 증감을 피하기 위해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자치성(현 총무성)에 있어서는 오랜 과제였다. 그렇지만, 적자기업도 과세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경제계나 집권당 등의 반대가 뿌리 깊어 실현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경제진흥을 위해 금융에 국채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부담을 초래하는 증세를 하면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지방세 운영을 담당하는 자치성은 “그 대상을 큰 은행만으로 하는 것은 세 부담의 공

평성을 잃는다” 등으로 반대하여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가 우선일까 지방이 우선일까. 결국 지방이 망하면 국가도 지방에 재원을 보전해야 한다. 은행을 튼튼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살고 그로 인해 지방경제도 살아난다. 상호간의 우선순위도 있는 것일까. 일본에서의 지자체 재정악화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東京都가 2000년도부터 도입한 외형표준과세(은행세)를 둘러싼 都와 15개 은행은 2003.10.8에는 최고재판소 제3小法廷(金谷利廣 재판장)에서 정식으로 화해한다.

은행측이 소를 취하였다. 크나 큰 논의를 불러일으킨 東京都의 독자과세 문제는 지방세법의 반영에 따라 도입으로부터 3년으로 전면 끝난 것이다.

東京都측과 은행측의 변호인단은 이 날 “① 세율을 3%에서 0.9%로 인하하고, 그 차액분과 가산금을 반환하는 것에서 소송이 해결했다고 쌍방이 확인한다. ② 은행측은 소를 취하였고, 都측도 여기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에 합의했다.

東京都는 都議會에 세율은 0.9%로 인하며, 은행측이 이미 납부해 버린 과거 3년분에 신 세율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은행세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2003.10. 6의 본회의에서 성립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 익일 7일에는 원고인 15개 은행분인 약 1,946억엔(1조9천억 원정도)만이 아니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은행까지도 포함하여 총 30개 은행에 약 2,344억 엔을 반환하였다.

은행측은 「都가 당초 和解案으로 제시한

1%의 세율보다도 양보를 끌어내고 화해에 최고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고 하는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에 응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시하라(石原) 東京都 지사는 “타당한 소프트 랜딩, (은행세가) 방아세가 되어 (국가의) 외형표준과세가 실시되는 것은 지방분권의 큰 일보로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법인사업세 외형표준과세 제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으로 되는 법인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억 엔을 넘는 법인이다. 2003년 기준 전체 274만 법인 중 약 3.3만 개의 법인이 대상으로 된다고 한다.

종래의 소득에 대신하여 부가가치할, 자본할을 설정하였으므로 도도부현의 입장에서 세금은 중립으로 된다. 안정성이 커진 것이다. 종래에는 소득에 의한 과세로서 세율은 9.6%였지만, 소득할(세율7.2%), 부가가치할(세율0.48%), 자본할(세율0.2%)로 되었다. 결국 소득과 외형기준의 비율은 3:1로 된다.

다. 도입시 제기된 과세

이시하라 동경도 지사의 은행에 대한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는 지방세법 제 72조의 19(사업세의 과세표준 특례) “법인이 행하는 가스공급업,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료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행하는 사업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사업의 상황에 따라 제 72조 제 1항 제72조의 12 및 제 72조의 16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의하지 않고 자본금액, 매상금액, 가옥의 바닥면적 혹은 가격, 토지

의 면적 혹은 가격, 종업원 수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소득 및 청산소득과 이들의 과세표준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근거를 둔다. 이 규정만을 읽어보면 특별하게 문제로 되는 것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과세대상을 자본금 5억엔 이상의 은행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둘째, 은행의 영업에 악영향을 주고 지금도 극복할 수 없는 금융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셋째, 동경도의 과세는 그 금액이 손금에 편입되기 때문에 타 부현의 법인세가 감수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

넷째,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받고 있는 부현과 받고 있지 않는 동경도에서는 재정자주권 확충의 관점에서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어디라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실현할 때 까지 여러 가지 마찰은 있다 하여도 위의 문제점은 극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 외국의 운용 실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소요비용을 그 수익자인 기업이 분담한다는 생각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이외의 기준에 의거 법인과세를 하고 있는 예는 많다.

미국의 미시건주(1999년 회계기준으로 지방세에 차지하는 재산세의 비율이 89.8%로 전미중에서 14위)에서는 이윤, 임금, 순지불이자, 감가상각비의 외형기준을 과세표준으로 한 단일 사업세가 과세되고 있다.

단일 사업세에 대해 미시건주에서는 경기호황에 의한 재정잉여의 발생에 따라 2.3%의 세율을 매년 0.1%씩 인하하는 법률이 1999년에 입법되었다. 감세정책의 성격상 재정조정기금이 2억5천만 달러를 하회하는 연도의 다음 해는 이 세율인하 조치는 정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뉴햄프셔주(1999년 회계기준으로 지방세에 차지하는 재산세의 비율은 98.8%로 전미중에서 1위)의 경우는 「기업사업세」 등 州 수준에서 외형표준과세를 실시하고 있는 예가 있으며 이들 이외의 주에서도 새로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원래 국제수준에 비해 높았으며 영업자본세도 과세되고 있었지만 구동독 지역에서 영업자본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영업세(독일의 영업세는 부동산세와 함께 물세로 분류되며 지방법인세의 개념임. 공동세의 주된 재원이 되며 지방세수중 약 40%를 차지함)」의 대중을 차지하는 영업수익세는 존속시킨 후 1998년에 영업자본세는 폐지하였다.

프랑스는 오래 끌어 온 실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 35시간 노동제의 도입을 계기로 급여총액에 과세하는 부분을 2003년에 폐지하였지만 「직업세(1976년에 시행된 본 세는 기업이 지불하는 소위 급여총액세이고 기업의 급여총액에 표시되는 경제활동의 규모

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받는 서비스 수준과 연계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성립되었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기업에 한하지 않고 사업 외에 독립하여 영위하는 활동, 소위 프로페셔널의 자유업도 그 대상으로 됨. 급여세가 아니고 직업세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음. 본 세는 시군구와 시도의 직접세이지만 그 징수는 국가가 행하여 시군구에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징수사무는 사업소가 소재하는 세무서 또는 지방공공채무국으로 되어 있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산가치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지방분권(1990년에 신 지방자치법을 발효하고 2000.4월에는 주지사의 직접선거도 실시)을 추진하기 위해 ① 독자적 지방세원의 부여 ② 중소기업의 부채 개선을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경제구조 개혁 ③ 세제의 간소화 관점에서 1998년에 「州생산활동세(EU의 시장·경제 통합을 배경으로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한다고 하는 국가재정 재건의 요청을 받아 세제 개혁이 시작됨. 종래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1998년에 도입된 외형표준과세의 지방법인세임. 주를 과세 단위로 하는 본 세는 재정의 분권화 촉진, 이제까지 복잡다기한 세를 통폐합하고 합리화한 점, 국제경쟁이 격화하는 속에서 가족경영의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이탈리아에서 차입금에 의존하는 종래의 경영 행태를 바꾼 점이 창설의 의의로 들어짐)」가 신설되어 새로운 외형표준과세가 실시되고 있다.

IV. 나오는 말

일본에서 외형표준과세의 도입이 논의된 배경은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법인소득 과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인과세를 활용한 법인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업의 활동가치(부가가치), 자본금, 급여총액 등 기업의 외형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과세 체도를 검토한다면 일본의 도입 사례는 참고로 될 것이다. 응익원칙에 따라야 한다면 지방세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세를 더 징수하려는 노력은 어느 나라

의 지자체에도 공통적 현실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원보장에 진력하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 까지를 지방에 이양해 주어야 지방분권이 달성될까. 들어맞는 지표는 없는 것 같다. 흔히 사용하는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기준재정수요액 만큼으로 족한 것인지.

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적절하게 배분한 뒤 그에 걸 맞는 사무에 따른 稅源配分을 하되 시대에 따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형태에 따라, 국가적 현실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향후 지향해 갈 큰 과제이다. ☺

